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2394

제안연월일 : 2025. 8.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09호)	이양수의원	2024.11.13.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650호)	서삼석의원	2025.3.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2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798호)	서천호의원	2025.4.14.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7회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

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법률 제 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2항 중 “어선중개업자”를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자”로 한다.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자----------

	----------.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